

인천지방법원 2020. 8. 12 선고 2020가단22104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정진

담당변호사 김태훈, 이승재, 이미나

피고A

변론 종결2020. 7. 15.

판결 선고2020. 8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727,573원 및 그 중 36,222,736원에 대하여 2019. 5. 10.부터 2020. 6. 1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갑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용래

별지